

제434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0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2)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3)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8)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6)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4)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7)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6)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4)
10.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9)
11.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9)
12.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4)
13.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4)
14.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5)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3)
16.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17.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9)
1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8)
19.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1)
20.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0)
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3)
2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3)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1)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4)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1)

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0)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8)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5)

상정된 안건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3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2) 3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3) 3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8) 3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6) 3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4) 3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7) 3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6) 3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4) 3
10.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9) 3
11.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9) 3
12.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4) 3
13.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민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4) 3
14.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5) 3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3) 3
16.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3
17.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9) 3
1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8) 3
19.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1) 3
20.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0) 3
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3) ... 3
2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3) ... 3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1) ... 3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4) 3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1) 3

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0)	3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8)	3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5)	3

(14시06분 개의)

○소위원장 고민정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2)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3)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8)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6)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4)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7)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6)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24)
10.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9)
11.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9)
12.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4)
13.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4)
14.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5)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3)
16.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9)
17.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9)
1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8)
19.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1)
20.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0)
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3)
2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3)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1)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4)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1)
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0)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8)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35)

○소위원장 고민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28항까지 28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 학자금 무상지급 관련해서 소득구간이나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이 기준을 정할 때 전체 학자금 지원 현황이나 평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준 등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 결정시의 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그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고 소득구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 제목과 내용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무상지급(국가장학금)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등에 관한 기준들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괄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2조(정의) 규정에서도 학자금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이와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공개’로 명칭을 바꾸고 관보에서 알리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외 3페이지 내용은 간단한 자구 수정 사항이고,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서 26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행일이 지났기 때문에 27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동의하고요. 전문위원의 자구 수정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의사일정 제1항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자료 1페이지입니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현행법에 규정된 설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위반하는 경우 특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은 따로 없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 비해서 필요성이 있는 입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라고만 규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좀 수정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학교의 장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시설·인력·예산상의 현저한 제약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이렇게 했고요.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그 뒤 페이지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이에요 법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입법 취지에는 당연히 동의가 되는데 제가 현안 몇 가지만 좀 물어보면, 특수학급의 설치를 학교장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결정은 학교장이 하는 겁니까, 교육감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학교장이 합니다.

○조정훈 위원 학교장이 하는 거고. 그러면 학교장이 특수교육을 받을 학생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보기에 정당한 이유로 못 하겠다 하면 지금은 안 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육청에 어느 학교에 가고 싶다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학교를 배정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서 학생을 입학 못 하겠다 취학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학생 한 명이라도 무슨 이유든지, 가깝든지 뭐 이유든지 내가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배정받고 싶다고 하면 배정해 줘야 되고 그러면 그 학교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특수학급을 열도록 강제하는 법안인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학교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제반 교육 여건 이런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무리한 경우에 꼭 강제로 열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내가 A라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이 지원을 해도 여러 가지상 교육청에서 이 학교로 배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근처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배정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든 특수학급이 없는…… 그런데 학생이 하나도 없으면 특수학급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법이 통과돼도?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학생이 없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학생이 어느 학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 학교를 제외하고는 근거리의 다른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그 학교에 꼭 설치해야 되는 경우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면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여

건을 조성해 주고 학교에서 입학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이 ‘시설·인력·예산의 현저한 제약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령으로 다 구체화시키시는 거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현재 보면 초등학교가 제일 많고, 중학교는 좀 더 적고, 고등학교는 훨씬 적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특수학급이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사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어서 더 의미 있는 법안인 것 같기는 한데,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강제로 만들어라 이런 거는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별다른 이유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학급 수도 여기 강제사항에 들어갑니까? 그러지는 않고,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반에 학생이 1명 정도씩 배정되어야 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한 반에 갑자기 애들이 많아져서 3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학급 수를 반드시 늘리긴 해야 되는데 못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 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늘리게 강제할 수는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은 기존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대상자가 유치원은 4명 이하 초등학교는 6명 이하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학급으로 늘려야 되고, 일단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 학급을 하나 더 늘리도록 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와 같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없으신 것 같으니……

○전문위원 윤상열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교육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로 되어 있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알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차관님이든 국장님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저는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이 과연 이러한 요청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수학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이것을 수용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특수교사가 제대로 배출도 되지 않고 있고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줄어들고 있고, 그런 전문 인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단을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수학급에 대한 요구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고민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줄지 않는데 특수학급 수는 줄어들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지만 사실은 큰 관심을 잘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법안만 통과시킨다고 해 가지고,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 법안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수용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건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심도 깊게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주제인데, 저도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안 되는데 법안만 만들어 놓고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우리가 법률을 그냥 책상 위에서만 논의하는 느낌이고요. 이것 좋은 취지니까 통과는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준비는 돼 있는데 하는 건지 제가 그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말씀 일단 들어 보고 제가 현장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 갈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교육부차관 최은옥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저희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무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노력해 나갈 것이고. 이 법은 그중에서도, 특수학급의 인원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4명, 6명, 7명 이렇게 학급 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해 나갈 건데요 이 법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에, 학생이 근거리에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을 때 교육청이 학급을 설치하도록 학교에 강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지영 위원 학교가 그게 감당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그런 여건은, 교육청에서 예산과 시설은 지원을 해 줍니다,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서지영 위원 교육청 의견은 들으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큰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잠깐 말씀하시지요.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견이 전혀 없고. 이 법의 전제는 교육청에서 학급 설치에 필요한 모든 시설·인력·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아마 주변 학부모님들이나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의 발로로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강제로 확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도 저도 안 하면서 그냥 뭉개고 있고 이런 경우에 교육부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설계되는 것 같고

요.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실제 전문 인력들을 늘리는 문제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진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갈수록 장애 학생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강경숙 위원 저도 짧게 첨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특수교사가 줄고 있고 양성대학이 부족하고 그것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사들이 많이 양성되어 있고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기회가 없는 문제라서 특수학급이 신설되면 아마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 거고요. 아까 근거리 진학 요구 말씀하셨는데 가까이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교육받지 못하는 것이 되면 그건 사실 차별금지법에도 저촉이 되는 문제라 시의적절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오늘 장애인 관련한 법안들이 몇 개가 더 있어서요. 의사일정 제4항에도 같은 법률 개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도 추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도 그때 더 열띤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사립대학에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원 2분의 1을 추천하는데 종교대학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의 추천권을 가지도록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종교대학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이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양성을’으로 문구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라는 현행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 과정상의 종교교육이나 종교음악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대학들이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교육부에서 이 대학의 범위를 고시로 정하고 있는데 12개 대학교의 경우에는 종교와 종교관련된 학과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종교대학의 범위에 대해서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6항에서 이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등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본적으로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인데요. 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학교를 고시하게 되는데 현재 고시에 12개가 있지만 고시하지 않은 대학들도 전체적으로 종교학과만 운영하는 대학 4개, 종교학과 일반학과 병행해서 하는

대학 5개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넣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지만 대학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금 더 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몇 가지만 드릴 텐데요.

일단 일반대학 같은 경우는 절반은 대학평의회회 또는 학운위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면 나머지 2분의 1은 학교법인에서 하는 건가요, 원래 일반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대학지원관 이주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법인은 학교법인에서 2분의 1, 대학평의회회에서 2분의 1을 추천하고요. 종교지도자양성법인은 학교법인 2분의 1, 종교단체에서 2분의 1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종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2분의 1을 하면 내나 종교와 관련되어 있거나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거기에 나머지 2분의 1까지 다 종교와 관련된 이런 분들을 넣게 되면 거의 이견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100%로 다 하겠다는 건가요?

○김준혁 위원 그건 좀 다르지요, 개방이사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그러니까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천위원회에서 누구를 추천하는지인데 보통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은 법인이 하고 절반은 평의회가 하든지, 절반은 법인이 하고 절반은 종교단체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런데 종교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다 종교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 이미 다 추천위원회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절반도 또 종교기관에서 사람을 넣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100%로?

○조정훈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질문은 이 법안과는 관련성이 딱히 없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 법안의 개정 사항은 학교법인, 일반법인과 종교지도자양성법인의 개방이사 추천 기준을 완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개방이사가 아니고 추천위원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조정훈 위원 다 아시겠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일반대학법인은 학교법인과 대학평의회, 그다음에 종교지도자양성법인은 학교법인과 종교단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이것을 바꾸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학을 일반법인으로 보고 어떤 대학을 종교지도자양성법인으로 보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지.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있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은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종교지도자와 관련된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에 동의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의 법안은 양성뿐만 아니라 그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들도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 안에 학과가 종교학과도 있겠지만 수학학과든 영어학과든 다른 학과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학생들이나,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100%가 다 종교기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나머지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이 학과와 학생들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닌가 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조정훈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아까 김준혁 위원님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아마 교육부도 하시겠지만, 어느 정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21개 학교법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독교와 가톨릭과 그다음에 승가 불교대학의 종교지도자양성대학법인 지정을 취소하려는 교육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원래 100%가 아니다, 순도 100%가 아니다라는 취지였는데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만 굳이 얘기하면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스님뿐만 아니라 그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위 종교인이 필요합니다. 종교음악을 준비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또 종교를 바탕으로 심리 상담을하시는 분도 필요한데 교육부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목사님, 스님, 신부님, 이 100%가 아니면 종교대학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 변경 대상이 아닌 일반법인 기준으로 개방이사 추천을 해야 된다는 걸 하다가 학교들과 여러 가지 조율을 한 끝에 이거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아마 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님? 더 이상 그건 추진하지 않는 거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지정 철회를?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대학들, 종교인 양성 대학의 지정 철회를 철회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작년에 고시를 변경하려고 했다가 변경하는 것을 철회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하지 않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기로 종교지도자양성법인이라는 카테고리들 정의함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전국에 있는 수백 개 대학 중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이런 대학들은 정관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세대학이나 이화대학이나 다른 대학이나 특정 종교 이념을 양성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리더를 기른다는 게 아니고 특정 종교의 양성을 위해서 이 학교들이 생겼다는 걸 정관 내에서 명시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는 그 종교의 자율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교육의 자율성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취지 또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지도자 양성 취지가 뚜렷한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 따라서 종교지도자양성법인의 종교단체들이 학교를 운영하게 허용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고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이미 해 뒀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갖고 특별하게 뭐가 더, 그러니까 사학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김준혁 위원 특혜 시비.

○조정훈 위원 관리가 나빠진다, 특혜 시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 저도 좀……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 그러면 하나만 더.

9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하는 학교에 종교적 색채 혹은 그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 운영돼 왔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종교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를 운영하더라도 정관에서 종교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학교가 만들어진 것이면 범위를 넓혀 줘 가지고 여기도 종교대학과 유사하게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해 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신학대학 같은……

○조정훈 위원 그게 아닙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신학대학 같은 건데 뒤에 9페이지 보시면 8개 학교가 새로 포함되는,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될 학교들이 이런 데거든요. 신학대학교…… 아, 현행에 있는 학교들?

○조정훈 위원 예, 이미 있는 학교예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새로 들어가는 학교는 저희가 여기에 자료를 붙여 놓지는 않았습시다. 그런데 정관상으로 봤을 때 9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 학교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김준혁 위원 잠깐만, 지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의원님의 안은 제가 판단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나 하면 일단은 종교계로 출발했으나 종합대학으로 간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가령 한신대학 같은 경우에도 한국신학대학에서 종합대학이 됐고.

그런데 종교기관으로 해서 종교대학으로 되어 있는 안인데 아까 교육부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를 하지만 왜 지금 보류하자고 하나면 신규 대학들이 있고 이와 관련된 특성을 조금 더 파악해서 연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이라고 하는 것이 길어질 것도 아닌 것 같고 교육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교육부에서 준비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셔서 마무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실은 말씀하신 게, 김준혁 위원님 취지도 맞는데 저는 오늘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대학이 종교대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법에도 나와 있는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을 우리가 개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도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등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거를 우리가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김민전 위원 그런데 7페이지 대학 이름을 보면 별로 이의 제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위원님,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궁금한 건 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여쭙보는 거예요.

2페이지에 있는 종교학만 운영하는 게 4개 4개 해서 8개고, 종교학 플러스 일반학과를 병행하는 게 8개 4개 해서 12개인 거잖아요. 현재 고시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양성에서 ‘만’자를 빼기 전, 그러니까 현행법대로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적용하려면 몇 개 대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적용되는 겁니까, 현재 개정 전

에?

○**교육부차관 최은옥** 현재 고시에 9개 대학이 빠져 있는데요.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이 제일 상위 법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대통령령과 고시를 차례대로 저희가 손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빠져 있는 대학들이나 추가될 대학들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못 들어 봤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검토도 필요한데 현재 일단 4개·4개, 8개·4개로 자료가 왔는데 법을 개정하기 전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이게 어디 몇 개 대학까지 적용되느냐고요? 20개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교육부대학지원관 이주희**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고시가 된 건데요 그때 21개, 폐교된 학교 하나 포함해서. 현재는 20개인데요. 그 당시에도 종교학과만 있는 학교가 8개 있었던 거고 섞어서 운영하는 학교가 12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만’이 빠지게 되면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종교학과만 하는 4개와 그다음에 일반학과도 운영하고 있는 5개 해서 9개가 더 들어올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수렴을 좀……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4개·4개, 8개·4개 이거는 현행법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고.

○**교육부대학지원관 이주희** 예, 2008년도 고시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하고 있는 곳이고 ‘만’을 빼게 되면 9개가 더 들어갈 것 같다, 맞아요?

○**교육부대학지원관 이주희** 예, 4개는 법이 개정되든 개정되지 않은 종교학과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지정 고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5개는 섞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어서요.

○**조정훈 위원** 저는 얘기가 조금 다른데.

국장님이십니까?

○**교육부대학지원관 이주희** 예, 대학지원관입니다.

○**조정훈 위원** 지금 현행법을 종교지도자 양성만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면 20개 대학 중에 8개만 자격이 있는 거고 12개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교육부대학지원관 이주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교육부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빼려다가 안 뺐 건데. 그런 거지요?

○**교육부대학지원관 이주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12개 대학들이 강력하게 항의해 가지고 뺐 거 아닙니까?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빼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 추가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요. 20개 대학조차도……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이해를……

○**백승아 위원** 저도 좀 발언을……

○**소위원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백승아 위원 그 부분을 저도 계속 질문하려고 해서 하는 건데, ‘양성만’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2쪽에 보면 이미 12개교가 현행법과는 다르게 종교학 외 일반학과도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법이랑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12개 학교는 용인이 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느 학교까지 더 확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9개가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고시 20개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종교지도자 양성이 설립 목적의 어느 한 일부분인 그런 학교에까지 다 확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이나 고시까지 다 바뀌야 되니까. 그러면 고시에서 어느 범위까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까지 확대될지 딱 규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깐 교육부 준비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아예 종교단체가 설립한 종합대학까지도 다 넓어질 수 있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지 오늘 이렇게 통과하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쪽에 보면 나오는 이 대학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형식으로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자구로 한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정훈 위원님이 적시하신 것 같은데 이랬으면 연세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종교학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종교인을 배출하는 거고 종교지도자 양성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대학도 그 학과가 있다는 이유로 4년제 종합대학도 포함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명확하지 않은데 9개 대학이라는 것의 기준이 있는 걸까요, 들어오는 기준이?

○교육부대학지원관 이주희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 집행, 신도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학과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정·고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만’을 제외하면 아까 백승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로 더 확대가 될지에 대해서 조금 불명확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조정훈 위원님 말씀은 이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물론 안 되지요.

제가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고민정 예.

○조정훈 위원 저는 아까 김준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종교·이념을 갖고 있는 사회지도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과, 이 대통령령과 이 법에서 규정한 대로 해당 종교의 단체를 명확하게 하고, 그 종교 관련된 교육, 선교 활동, 지도·담당자의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를 구분하는 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못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20개 대학들을 보면, 제가 이 대학들과 일반적인 기독교 또 다른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대학 정관을 다 봤는데 정관에서 딱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정관으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승가대학이나 가톨릭대학이나 여러 가지 장로신학대학은 그 교계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이라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새는 꼭 목사님, 스님, 신부님이 아니라 음악 하는 분, 상담하는 분, 심리 하는 분 여러 가지 넘어가기 때문에 아까 그 통계도 저는 관련 학과라는 것에 종교계 학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과 고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위원님들, ‘대통령령과 고시로 잘해 주세요’라고 당부하고 통과시킨 법안이 저희가 한두 서너 개입니까? 고시하고 대통령령까지 깔끔하게 보고 우리가 통과시킨 법안이 몇 개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취지에 있어서 그리고 큰 틀에서 사립대, 우리가 헌법과 법률 질서를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특정 사립학교 그것이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자신들의 건학 이념을 달성하는 자율성을 유지해 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이미 현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종교지도자 양성하는 학교들을 아까 얘기한 일반 법인과 종교지도자 양성 법인의 다른 구분으로 하게 해 주자.

그런데 저는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걸 줄이려고 고시를 내서 사달이 발생한 겁니다. 그 취지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물어봐도 이 ‘만’ 때문에, 만 자가 있기 때문에 순도 100% 종교학과만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취지로……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시도하려다가 지금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멈춘 건데 그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만 자를 빼고 대통령령과 시행령으로 정리하자, 그러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간을 넓게 주고. 그런데 이것을 시행령과 이것까지 다 보고 통과시키자? 솔직히 우리가 시행령하고 대통령령 보고 통과시킨 법안이 몇 개나 있습니까?

○백승아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지금 현재 이 법안을 반대하자고 반대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김준혁 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백승아 위원 시행령 보고 하자고 하는 게 전혀 아닌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9페이지 보시면 아까 12개 학교가 문제의 시발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서울신학대학, 장신대, 영남신학대 이런 데들을 교육부가 빼려고 하다가 다시 넣었다. 저도 사

실 이 자료 보고 알았는데 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종교계 학과 비율이 6%밖에는 안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94%는 뭐예요? 신학대학이니까 100% 다 종교학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조정훈 위원 이 통계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면 이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신학대학 안에 신학과만 있지가 않네요. 사회복지학과, 아동보육학과, 컴퓨터공학과, AI융합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이런 학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과들이 다 종교와 관련된 연구 학과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종교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는 아닌 것이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면 사실은 이름이 신학대학이고 장신대학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종교지도자로 갈 학생들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오히려 교육부가 이전에 고시를 냈던 것을 철회하실 게 아니라 그냥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뒤늦은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에는 교육부에서 그런 고시를 냈는지도 철회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걸 보니까 이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학교 안에서 6.3%만 종교계 학과고 나머지, 넉넉하게 준다 칩시다. 한 반반이라고 쳐도 그러면 이름은 신학대학이라고 돼 있지만 절반의 학생들은 전혀 종교와 상관없는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는데 여기를 종교대학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교육부가?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지금 현재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이러한 대학은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딱 엄격하게 종교지도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운영 등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 이렇게 넓게 해 놔는데요. 이게 연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딱 무자르듯이 해 가지고 개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없었을 때지만 고시를 개정하려고 했던 이유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으로 분류가 되면 저희 기관인증평가라든지, 대학평가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학과의 학생들도 다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또 학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육 여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시에서 종교지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고 했던 의도인데, 이게 연혁적으로 정말 수십 년간 이렇게 되어 온 거라서 단순히 저희가 의도한 것 가지고 개편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때 철회를 했던 거고요. 지금도 그와 마찬가지로 개편을 딱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차례로 드릴게요.

○김민전 위원 사실 여러 다른 학과가 많이 있고 오히려 종교학과가 작다라고 하지만 이런 대학에 가는 분들이 다른 학과라고 할지라도 그 종교와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가지

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첫 번째는 하고요.

두 번째는 종교지도자라는 게 꼭 스님이나 목사님 되는 게 종교지도자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종교지도자라는 그 안에는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종교지도자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를 목사님이나 혹은 스님 정도로만 딱 해서 종교학과에 오신 분이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저는 조금 옳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안에서 종교지도자 ‘만’을이라고 하는, 만 자를 뺄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주된 목적으로’ 혹은 ‘주요 목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해석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안 빼기도 어려운데.

○김민전 위원 그러니까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종교지도자가 뭔지를 두고 지금 막 논란이 일어나니까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조금 다른 학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큰 틀에서 위원장님도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니까 이 법안은 어쨌든 조금 보완, 조정한 간사님께서서는 오늘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조금 전에 교육부 말씀도 들어 보고 또 한일장신대 사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김민전 위원님 말씀하신 게 큰 틀에서는 저는 공감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지도자가 꼭 성직자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직자가 아닌 많은 분들이 종교와 관련해서 나름의 깊은 고민과 또 공부 연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종교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종교지도자 양성을 하는 것도 합리적인 근거일 수가 있다.

그런데 또 너무 많은 과들이 존재하는 것도 일단 혼란스러운 측면도 존재하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부차관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보완하시겠다는 건지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또 크게 반대가 없다면 오늘 정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김준혁 위원님 말씀한 것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요, 백승아 위원님 아까부터 손을 드셔서.

○백승아 위원 종교대학의 경우에 종교단체가 지금 개방이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대상 범위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꾼다 이걸데, 지금 종교지도자 외에도 일반 관련 학과를 저도 찾아봤거든요. 보면 거의 복지 관련된 거예요. 상담, 사회복지 이런 복지에 관련된 것들은 일반 학교의 일반학과랑 거의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종교랑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는 학과들이예요.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개방이사 2분의 1이나 추천을 한다? 일반대학은 학운위가 추천하잖아요, 대학평의원회나. 거기에서 2분의 1을 추천하는데 그것과 맥락이 너무 달라지고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아니라 종교단체의 입김이 세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저는 있

다고 생각해요.

물론 만약에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종교지도자만 양성하는 대학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종교단체에서 절반 정도 이사 임명할 수 있지요. 추천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종교음악도 있지 않나요? 음악, 사회복지, 아동, 여러 가지를 다루는 학과들에서…… 개방이사를 종교단체에서 절반이나 추천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학교가 몇 개냐 이걸 떠나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이 통계가 믿을 수 없다 그러셨지만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자료일 테고 만약에 믿을 수 없다고 하시면 이 통계가 나온 근거 제시를 교육부에서 해 주셔서,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학과 수는 종교계 학과가 6.3%, 재학생 수 종교계 학과는 12.8%, 서울신학대학교는 이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일반 과라는 건데 종교단체에서 절반의 이사를 추천한다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운영하는 사례들을, 실제로 이 대학에서 종교지도자 관련된 과나 학생이 몇 명인지, 일반학과가 몇 명인지 구성원 이런 것들도 다 조사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이걸로 논의가 길어지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지만, 아까 그 9페이지 통계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되지 않는 게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성직자, 스님·신부·수녀·목사님을 양성하는 과정을 아마 종교계 학과로 잡으셨을 거고 그 외에 다른 과로 갔을 텐데, 아시는 대로 종교음악이나 선교학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과들까지 포함하면 이 통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김민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입학 기준에도 종교대학이기 때문에 종교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대학에서는 종교를 차별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대학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록 컴퓨터공학을 하더라도 이 대학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기술 삼아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펼치겠다, 이게 선교가 될 수도 있지요. 이런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건데 저는 우리 사회가 특정 대학에서 종교지도자, 이게 우리가 국립대학을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본인들이 그것이 불교가 됐던 가톨릭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자신들의 재원을 내서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깊이 개입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방금 얘기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2분의 1 어떻게 넣느냐, ‘대학평의회나 종교단체나’ 지금 이거 논의하고 종교대학의 정의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이것이 정의된다고 하는데, 미루자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뭘 정의를 해야 미루실 겁니까? 대통령령을 갖고 올 겁니까? 시행령을 갖고 올 겁니까?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 몇 개 학교가 더 들어가는지를 판단하실 겁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법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문제이지 우리가 언제 마지막까지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법 통과했습니까?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는 게, 그러면 종교지도자 ‘양성만’이 아니라 ‘양성을’로 개정하면 너무 많이 열어 준다고 하시면 아까 김민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 정의하면, 그리고 나머지 주된 목적에 관해서는 대령이나 시행령으로 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기준을 학과 수나 재학생 수의 과반을 넘어야 된다는 대령을 넣으시든지, 그러면 추가가 몇 개가 되는지는 분석하면 되는 거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 종교, 특정 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라도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논의한 게 아니라, 제가 발의한 법안이 논의 명단에 들어온 게 몇 달 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지요?

○소위원장 고민정 몇 달 전은 아니지요.

○조정훈 위원 몇 달 전입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며칠 전이지요.

○조정훈 위원 그래서 교육부는 어떻습니까? 김민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정안은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지금 대령으로 다 구체적으로 갖고 와라가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게 왜 꼭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이렇게 무리스럽게 하시느지가 이해가 안 가고.

○조정훈 위원 저는 무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여기에……

○조정훈 위원 이거는 저는 일반……

○소위원장 고민정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종교계 학과의 비율이 6.3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는 이게 맞다 누구는 이게 아니다 하면 교육부에서 왜 이런 통계 자료를 갖고 왔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들으면 좋겠고.

이거 말고도 새롭게 9개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9개는 맞는지 아니면 한 3개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듣고 그런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일 국회의원직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다른 상임위를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교육위 상임위는 계속해서 열리지 않습니까?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개인에 대한 무례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김준혁 위원 이거는 서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왜 꼭 오늘……

○조정훈 위원 그런 발언을 하실 수가……

그러면 제가 이거 지금 사적으로 무슨 대학 도와주려고……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언제 사적……

위원님, 일부러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 꼭 오늘이어야……

○조정훈 위원 표의 하나가 잘못되어서 안 된다, 대통령령을 보고 하자……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지금 확인이 안 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조정훈 위원 확인이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학교가 들어가는지, 종교계 학교의 비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훈 위원 그게 이 논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왜 관계가 없어요, 이 학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있는데?

○조정훈 위원 종교대학으로 인정하는 대학의 기준을 뭐로 잡을 건지의 문제이지. 그게 10개건 20개건 30개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1개면 괜찮고 2개는 안 됩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우리가 여태까지 법안 논의하면서 한번 심의하고 안 되면 그다음에 또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싸움을 할 이유가 됩니까?

○조정훈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법안소위 한 번 더 하자고 하시든가.

○조정훈 위원 차관님, 그러면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것은 동의가 됩니까? 그것도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거는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정하면 이 개방이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고시에 대학을 넣고 빼고를 하면……

○조정훈 위원 그러면 고시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안을 통과하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 이 법을 개정하면 저희가 고시를 고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시를 고치면 이 개방이사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관인증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영향을 고려할 때……

○조정훈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법을 발의한 게 지금 6개월도 더 됐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동안은 이의 없음, 어떤 입장도 없음, 찬성한다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입장 갖고 오신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무자 수준에서 검토할 때 좀 놓친 것을 이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게 돼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뭐가 더 추가적으로 해야 이게 끝나는 겁니까? 뭘 확인해야 돼요? 9개인지 5개인지 6개인지? 저는 그거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하나도 더 안 해도 돼요. 기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런데 그 대학들이 이해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학교법인과 대학에도 의견을 저희가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혁 위원 조정훈 위원님, 현재 이것 관련해서 굉장히 답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전체적인 논의를 좀 보시고.

저는 제가 1호 법안 올린 게 지금까지 법안소위에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꼭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보완하자는 것이니까 조정훈 위원님 다음 법안소위 때 이 논의를 하는 게……

○조정훈 위원 아니, 지금 문구 조정의 문제도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만’을 빼자는 것도 동의가 되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도 동의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고시를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이게 결국 몇 개의 대학

이 더 들어가고 말지에 따라서 이걸 해 줄지 말지의 문제를 결정하겠다는데 그건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10개가 들어가든 20개가 들어가든 종교대학이면 종교대학대로 해 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 영향력 평가를 왜 그런 식으로 하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법안 발의했을 때 ‘교육부 입장 없음’ 왔는데 무슨 영향과 어떤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서 또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러면 어떻게 법을 합니까?

○소위원장 고민정 저희가 무슨 벽창호도 아니고 저희도 의견을 내고 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정해 놓은 정답만……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심의합니까, 교육부가 다 답안 정해 놓고 하는 거면?

○조정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표결로 해 주십시오. 제가 부결되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간사님 이게……

○김준혁 위원 이거는 표결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고민정 지금 간사님 혼자 하는 상임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훈 위원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김준혁 위원 진행하십시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김준혁 위원 아니, 정회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소위원장 고민정 아니, 지금 한 시간 동안 이 법안 하나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서지영 위원 조금 정회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김준혁 위원 그러십시오.

○소위원장 고민정 그러십시오.

그러면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0인)

강경숙 고민정 김문수 김민전 김준혁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최은옥

대학지원관 이주희